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. 3. 31 선고 2020가단1369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

피 고 1. A

2. B

3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우

변론 종결 2021. 3. 10.

판결 선고 2021. 3. 31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거제시 D 임야 14876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, E과 피고들이 2015.10. 21.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 중 4/10 지분에 관하여, 피고 B, C은 이 사건 토지 중 각

3/1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5.10. 21. 접수 제66706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의사인 E은 비의료인인 F 등과 공모하여 E 또는 G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인 H요양병원을 개설하고
운영하면서, 2008. 9. 25.경부터 2015. 10. 2.경까지 마치 H요양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
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
합계 26,964,196,320원(= 11,463,040,790원 + 15,501,155,530원)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.

나. 원고는 2017. 2. 14. 위 가항 기재 사실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E에 대하여 총
30,482,107,55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였다.

다. 한편, E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2015. 10. 21. 자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
4/10 지분을 처인 피고 A에게, 이 사건 토지 중 각 3/10 지분을 아들인 피고 B, C에게 각 증여한
다음, 이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5. 10.21. 접수 제66706호로 피고들 명의의
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원고는 2020. 6. 11. E과 피고들 사이의 위 다항 기재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
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
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5, 6, 7, 8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)의 각 기재,
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

가. 피고의 주장 요지

원고가 2017. 2. 14. E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징수를 결정하고 통보한 이후 E의 재산내역을 조회함으로써 늦어도 2018. 9.경에는 이 사건 토지가 E의 유일한 부동산이라는 사실, E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, 증여 당시 E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. 그럼에도 원고는 2020. 6. 11.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,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.

나. 판단

- 1)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'취소원인을 안 날'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,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,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,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는데,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채권자가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(대법원 2000. 9. 29. 선고2000다3262 판결 등 참조).
- 2) 살피건대, 을 제1, 2, 3, 5 내지 9,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되는바, 이를 앞서 인정한 사실과 종합하여 보면, 원고는 E의 모든 재산내역을 조회한 결과 늦어도 2018. 10.경에는 E이 채무초과상태에 서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.
- 가) 원고의 의료기관관리지원단(이후 의료기관지원실로 조직이 개편됨)은 의료법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징수를 위해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민사상 재산보전처분,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은닉재산 발굴, 강제집행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.
- 나) 원고의 의료기관관리지원단(의료기관지원실) 소속 직원은 2017. 3. 22.부터 2018. 10. 23.까지 6회에 걸쳐 이 사건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였으므로, 이를 통하여 E이 2015. 10. 21. 이 사건 토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.
- 다) 원고의 직원은 2017. 9. 13. 보험료, 기타 징수금의 체납처분을 할 목적으로 E명의로

토지(임야)대장, 자동차등록원부,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열람하는 방법으로 E의 전체 재산내역을 조사하였는데, 그 결과 E 명의의 중고 자동차가 존재하고 그 밖에 E 명의의 광주은행, 신한은행 계좌에 예금이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, 당시 E의 적극재산으로는 약 30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.

3)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E와 피고들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 다는 사실 및 E의 사해의사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. 그러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.

판사 진현섭